



유류오염 추가보상기금협약 3월3일 발효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 증액

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크게 강화하는 국제협약이 3월3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002년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 이후 2003년에 유럽연합 등 각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제유류오염 보충기금협약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일본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지역 7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이 협약이 정식으로 발효하게 된 것이다.

1992년에 제정된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협약(CLC 1992)과 국제기금협약(FC 협약)에 정해져 있는 피해보상제도를 보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협약은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사고마다 7억5,000만 SDR(1SDR : 1.4 달러)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2억300만 SDR 보

다 크게 증액됐다.

이와함께 이 협약은 기존 협약에 가입한 국가만이 비준할 수 있고, 피해보상을 담당하는 국제보상기금의 운영이 전적으로 화주(정유회사)의 부담금으로 유지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IMO는 협약 발효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협약 발효로 1992년 협약에 규정된 보상한도를 실질적으로 증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이같이 늘어난 보상금액으로 기존 협약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피해부문을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IMO는 1997년 일본 연안에서 일어난 나호드카호 사고와 1999년 프랑스 연안에서 발생한 에리카호 사고를 계기로 기존 협약의 보상한도를 증액시키는 등 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다.

싱가포르, 입출항선박에 무장경비 서비스

싱가포르가 해상에서 일어나는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항만에 입출항하는 특정선박에 대해 무장한 보안팀을 승선시켜 보호하기로 결정, 세계해운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싱가포르 해군은 이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근 해상보안팀(Accompanying Sea Security Team)을 창설하고, 4월부터 자국해상에 배치하여 선박 경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상보안팀은 해군병력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을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선원 자격이 있는 정예요원과 엔지니어링 전문가, 무선 통신인력 등 최고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פור는 입항선박이 사전에 보고한 입항정보와 화물 및 기타 정보를 토대로 경비대상이 되는 선박을 선정할 계획인데, 업계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이 우선 경비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 해상보안팀은 권총과 같은 무기를 휴대하고 선박에 대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나 선박을 수사하거나 특정인을 체포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